

의안번호	제 18 호
의 결 연 월 일	2022년 9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발 의 자	이동우 의원 등 8인
발의연월일	2022년 8월 30일

#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이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
----------	----

발의연월일 : 2022년 8월 30일  
발 의 자 :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의영

## 1. 제안이유

도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이 확산됨에 따라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협력 등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다. 계획의 수립·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라. 사업의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 마. 지도·감독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3.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붙임
- 다. 협 의 :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계 보전 또는 교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연환경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책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방제 계획
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처리·재활용 방안
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도민, 기업·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
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처리·재활용
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거·처리·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지원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실적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 환수) ①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
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
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
4.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때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만 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0. 16., 2019. 12. 10.>

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2.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4. (이하 생략)
5.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이하 생략)
7.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8.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다. 삭제 <2018.10.16.>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9. (이하 생략)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도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이 확산됨에 따라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함

## 2. 비용발생 요인

-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용역비(5년마다)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활동 지원 사업추진

##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제6조(계획수립)
-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사업지원)

## 4.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2027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
  - 계획수립 : 외부용역 추진
    - 기추진\* 중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용역 : '22년 3억원
  - 사업지원
    - 지원건수 : 매년 4개 사업 선정
    - 지원금액 : 사업당 최대 25,000천원/년 지원
    - 보조율 : 기준보조율 100% 적용

### 나. 추계 결과 : 500,000천원(도 100%)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활동 지원 사업 지원(20개사업) : 25,000천원/1개사업당

구 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비고
지원 개소	20개소	4	4	4	4	4	
소요예산(천원)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활동 지원 사업지원 : 도비 100%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용역	-	-	-	-	-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활동 지원 사업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지방채						
기 금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